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33 발의연월일: 2025. 1. 22.

발 의 자:허 영·윤준병·박상혁

박민규 · 임호선 · 황 희

진성준 • 전재수 • 한민수

정일영 · 조계원 · 김문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군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관후보생이될 예비장교후보생,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등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려금과 유사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경우 대상자가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제적된 경우 현행법에서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비하여, 장려금의 경우환수에 관한 사항이 부령에 규정되어 있고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도없어 장려금의 지급 관리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려금을 지급 받은 군인들의 복무기강을 강화하고 장려금 환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2조의2제2항·제3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하여"를 "위하여 선발 절차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장려금의 지급"을 "사람의 선발·취소, 장려금의 지급 범위·방법, 제2항에 따른 환수 금액 등"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급한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본인이 반납하지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

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려금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62조의2(장려금의 지급) ① 각 제62조의2(장려금의 지급) ① ---군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위하여 선발 절차를 거쳐-----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려 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 62조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 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 3. (현행과 같음) 1. ~ 3. (생략)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 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 이 있는 사유로 선발이 취소되 거나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 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본 인에게 지급한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 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 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 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를 반납하지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u>장려금의 지</u>

 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